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4. 9. 24(수) 17: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제39차 회의의 속기록, 제4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42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 국회에서 요구한 2014년 제39차 회의의 속기록을 제출하되, 비공개로 진행된 ‘한국방송 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 하기 위해 발언위원과 사무국 보고자의 성명을 음영 처리하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개인의 성명을 음영 처리하여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함

5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제42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

6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7 의결사항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2014-43-148)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4.10.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 등 6개의 고시 제·개정안을 오남석 이용자정책 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 원안 중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2조(공시내용 및 방법) 제3항'을 삭제하고 '제2조 제4항'을 '제2조 제3항'으로 수정하며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이통사 직접 지원금'란 등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함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결정에 관한 건(2014-43-149)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4조 제1항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정하도록 고시에 위임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지원금의 상한액의 범위를 25만원~35만원으로 규정하고 방통위가 이 범위 내에서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금 상한액 결정에 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 이동통신서비스사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 변화, 기존 상한액(27만원)에 '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14-43-150~159)

- o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중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관하여 오남석 이용자 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원안 중 (주)유니크인에 대한 과징금은 '14년 1월~3월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과하기로 수정하여 의결함)

6. 폐 회 (19:24)